[공모펀드 변경안내]

가. 펀드명 : 유진챔피언뉴이코노미AI4.0증권자투자신탁(H)[주식]

나. 변경시행일 : 2021년 7월 16일(금)

다. 변경 대상 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라. 주요 변경 내용 :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3) <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개정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및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업자의 종류 및 형태	<신 설>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신 설>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3) <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개정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	투자위험등급 2등급 : 높은 위험 유진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진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2.0361% 수준이므로 유진자산운용㈜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

<table>
<tr><td></td><td>될 수 있습니다.</td><td>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td></td><td>〈신 설〉</td><td>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td></tr>
<tr><td></td><td>〈신 설〉</td><td>※ 위험등급변경 내역
<table>
<tr><th>변경일</th><th>변경전위험등급</th><th>변경후위험등급</th><th>변경사유</th></tr>
<tr><td>2021.07.16</td><td>2등급</td><td>2등급</td><td>-설정기간 3년 경과로 인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한 위험등급이 아닌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2021.07.01)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 22.0361%)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td></tr>
</table></td></tr>
<tr><td></td><td>〈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1)투자대상자산 고려 투자위험등급 기준
1등급(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사전계획된 수익구조상 손실가능비율이 원금의 20%초과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신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td><td>〈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1)투자대상자산 고려 투자위험등급 기준
1등급(매우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레버리지(차입)을 일으키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td></tr>
</table>

	• 투기등급채권 등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다소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주식형 및 주식파생형) • 사전계획된 수익구조상 손실가능비율이 원금의 20%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8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 고위험자산에 5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5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낮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 사전계획된 수익구조가 원금보존추구형으로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한정) • 저위험자산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매우낮은위험) (생략) 〈각주〉 1. (생략)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보부대출 및 대출채권 등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다소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주식형 및 주식파생형) ③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레버리지(차입)을 일으키지 않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귀책사유 이외의 협약 해지 시 원금회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낮은위험) 〈삭제〉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단,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한정) 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매우낮은위험)(현행과 같음) 〈각주〉 1.(현행과 같음)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투기등급채권 등*, 무담보대출 및 대출채권, 파생상품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3.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자산유동화관련 채권(BBB+ 이하), 후순위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등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이상), CP(A3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5~12(생략)	* 투기등급채권 등: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자산유동화관련 채권 (BBB+ 이하), 후순위 채권, 주권관련사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 3.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이상), CP(A3-등급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11(현행과 같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및 “라. 운용자산규모”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투자비용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및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